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9-182호

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:소로1-3호선)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

1. 부산광역시 고시 제1973-393호(1973.11.29.)로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1988-354호(1988.11.12.), 동래구 고시 제1994-337호(1994.10. 1.), 연제구 고시 제1995-35호(1996. 1.18.), 부산진구 고시 제1997-62호(1997. 7. 3.), 부산진구 고시 제2001-65호(2001. 9. 7.)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3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, 동법 시행령 제100조 및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고,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11월 13일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2-127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:소로1-3호선)

다. 사업시행 규모 : 도로개설 L=105.0m, B=10~11m, A=1,059㎡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1). 사업시행자 :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종대)

2). 주 소 :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40-1번지

마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1).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

2). 준공예정일 : 2020. 07. 31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□지번□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□권리자의 성명□주소: [붙임] 조서와 같음

사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 관리청에 무상귀속

[붙임]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(지장물) 및 소유권 이외 의 권리자 조서

연번	소재시	지번	지목	지적면적	편입면적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			(㎡)	(㎡)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 내용	
총 계				1,059.0	1,059.0						
1	부산진구 양정동	22-127	구	24.0	24.0	국(국토교통부)					
2	부산진구 양정동	22-133	대	3.0	3.0	연산6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106,4층				
3	부산진구 양정동	22-134	대	11.0	11.0	연산6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106,4층				
4	부산진구 양정동	22-135	대	33.0	33.0	연산6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106,4층				
5	부산진구 양정동	22-147	임	578.0	578.0	연산6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106,4층				
6	부산진구 양정동	24-16	대	19.0	19.0	연산6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106,4층				
7	부산진구 양정동	24-18	대	14.0	14.0	연산6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106,4층				
8	부산진구 양정동	24-20	대	174.0	174.0	연산6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106,4층				
9	부산진구 양정동	24-22	대	66.0	66.0	연산6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106,4층				
10	부산진구 양정동	24-23	학	34.0	34.0	부산시					
11	부산진구 양정동	479-98	구	37.0	37.0	국(국토교통부)					
12	부산진구 양정동	산54	임	66.0	66.0	연산6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106,4층				